

수 신 [REDACTED] 님
제 목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목 차>

- 1. 이 사건에 적합한 혼인관계의 해소 방법
 - 가. 이 사건에서 협의이혼이 가능한가요?
 - 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협의이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 2. 협의이혼의 절차 알아보기
 - 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협의이혼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 (1)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의 작성 방법
 - (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및 관련서류들의 제출 방법
 - 나.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제출 이후 절차
 - (1) 가정법원의 심판 정보 및 확정증명서의 제출
 - (2) 양육비 부담 조서의 작성
 - (3) 숙려기간
 - (4)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 다. 협의이혼 완료 후 이혼신고 절차
 - 라. 협의이혼 소요 기간
- 3. 위자료에 관하여
- 4. 재산분할에 관하여

1. 이 사건에 적합한 혼인관계의 해소 방법

귀하는 혼인신고를 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혼인관계의 해소 방법에는 부부 쌍방이 타인의 개입 없이 진행할 수 있는 "협의 이혼", 법률상 이혼 사유가 있어 법원의 강제적인 판결을 받는 "재판 상 이혼"의 방식이 있습니다.

가. 이 사건에서 협의이혼이 가능한가요?

귀하와 상대방 배우자 둘 다 이혼을 원하여 이혼의사의 합치는 있으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및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경우 [REDACTED]

[REDACTED] 결정을 받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양 당사자가 이혼의사가 있어야 하며, [REDACTED] 협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본 사안에서와 같이 양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하나 [REDACTED]에 대해서만 부부간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이 [REDACTED] [REDACTED]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REDACTED]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협의이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도 [REDACTED]합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이혼의사의 합치는 '필수'입니다). 반면,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REDACTED]의 합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절차에서 법원이 [REDACTED]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REDACTED]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부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은 채로 협의이혼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결국 최종적으로 협의이혼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둘 중 한 당사자가 [REDACTED] 바꾸기도 합니다.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등의 이유로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REDACTED]까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협의이혼의 절차 알아보기

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협의이혼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1)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의 작성 방법

협의이혼은 서로간의 합의만 있으면 비용 및 시간 소모를 최소한으로 하며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작성하는 협의이혼신청서에 쌍방의 의견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조율하여야 추후 분쟁의 가

능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의 정확한 명칭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는 [REDACTED]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귀하와 상대방 배우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신청 취지 등을 [REDACTED]로 기재합니다.

신청서 제출시 귀하와 상대방 배우자의 [REDACTED]을 1통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및 관련서류들의 제출 방법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들은 **부부가 [REDACTED] 제출합니다.**

이때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REDACTED]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신청하는데,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가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REDACTED]에 제출하면 됩니다.

나.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제출 이후 절차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와 필요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REDACTED] 안 내"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아래에서 설명하는 "[REDACTED]"이 도과한 후, 법원에서 정해진 "[REDACTED]"에 출석하여 [REDACTED]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협의이혼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1)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의 제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된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REDACTED] 양육과 관련된 사항은 이혼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REDACTED]를 받아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협의 이혼을 진행하시더라도 이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참고 사항

혼인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 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판례는 혼인이 불성립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므로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는 재산분할청구가 아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에 이른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인의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인바,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예물·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서울가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 판결)"

이상과 같이 저희 법무법인의 의견을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답답 웹사이트의 전화/온라인상담 기능을 통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 전제) 본 의견서는 관련 서류의 검토 없이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만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므로 오로지 본 의견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삼가서는 안 됩니다. 본 의견서의 내용을 참고로 조치를 취하거나 삼가는 행위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언은 웹사이트를 통해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서의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